#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(김윤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599 발의연월일: 2025. 4. 4.

발 의 자:김윤덕·임오경·조계원

윤준병 • 이춘석 • 이원택

김교흥 • 문진석 • 홍기원

이수진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

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폭증과 치매유병률의 상승에 따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"치매국가책임제"의 일환으로 2011년 「치매관리법」이 제정되었음.

그런데 "어리석다"는 의미를 지닌 "치매"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치매 진단이 환자와 가족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, 이로 인해 치매 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치료 적기를 놓치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현행법상 "치매관리"의 내용을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지원체계 마련, 환자 관리·돌봄 전문 수행기관 및 인력 확충 등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·체계적인 보호·지원과 관련 인프라 확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이 법 명을 "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"로 개정하

고, "치매"용어를 "신경인지장애"로 변경하며, 신경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,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법률 제명을 「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로 함(안 제명).
- 나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,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신경인지장애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고 신경인지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함(안 제3조제1항).
- 다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 전사고와 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경인지장애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(안 제3조제5항).
- 라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진단 및 치료·돌봄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).
- 마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,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

(안 제18조).

- 바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관리 전문인력과 신경인지장애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·훈련하는 데에 노력하도록 함(안 제19조).
- 사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돌봄과 보호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를 교육·관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).
- 아.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인지장애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등 신경인 지장애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신경인지장애 센터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함(안 제21조).
- 자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신경인지장애돌봄기관을 지정하고 신경인지장애환자와 신경인지장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).

법률 제 호

##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

치매관리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신경인지장애의 예방,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신경인지장애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·시행함으로써 신경인지장애로 인한 개인적 고통 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신경인지장애"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, 언어능력, 시공간 파악능력,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인지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.
- 2. "신경인지장애환자"란 신경인지장애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

- 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신경인지장애로 진단받 은 사람을 말한다.
- 3. "신경인지장애관리"란 신경인지장애의 예방과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신경인지장애에 관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인프라 확충 등을 말한다.
- 4. "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수행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  - 가. 제21조의 중앙신경인지장애센터
  - 나. 제22조의 광역신경인지장애센터
  - 다. 제23조의 신경인지장애상담전화센터
  - 라. 제24조의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
  - 마. 제25조의 신경인지장애돌봄기관
  - 바. 제26조의 신경인지장애안심병원
  - 사. 제27조의 공립요양병원
  - 아. 그 밖에 제3조제2항의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
- 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,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신경인지장애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고 신경인지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관리에 관한 사업(이하 "신

경인지장애관리사업"이라 한다)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신경인지 장애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예방·관리 및 치료와 부정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경인지장애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⑥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신경인지장애관리 및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신경인지장애극복의 날) ① 신경인지장애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신경인지장애에 관한 인식개선 및 극복 등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신경인지장애극복의 날 로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.

#### 제2장 신경인지장애관리종합계획의 수립 · 시행 등

- 제6조(신경인지장애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신경인지장애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경인지장애관리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-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신경인지장애의 예방 ·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
  - 2. 제12조에 따른 신경인지장애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
  - 3.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치료·보호 및 관리
  - 4. 신경인지장애에 관한 홍보ㆍ교육
  - 5. 신경인지장애에 관한 조사 · 연구 및 개발
  - 6. 신경인지장애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
  - 7. 신경인지장애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
  - 8. 신경인지장애관리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 조성
  - 9. 지역사회중심의 신경인지장애 관리 및 신경인지장애환자 돌봄
  - 10. 그 밖에 신경인지장애관리에 필요한 사항
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. 이하 같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신경인지장애관리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 관이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·도지사가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.
- ⑥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 군수·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·단체·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⑦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국가신경인지장애관리위원회)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신경인지장애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신경인지장애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

다)를 둔다.

- 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  - ③ 위원은 신경인지장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 -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·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국가신경인지장애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
  - 2.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- 3.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  - 4.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
  - 5. 그 밖에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- 제10조(신경인지장애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인지장애의 현황,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고,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 하기 위하여 신경인지장애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5년 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・법인・단체・

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신경인지장애관리 등

#### 제1절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

- 제11조(신경인지장애연구사업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인지장애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신경인지장애 연구·개발 사업(이하 "신경인지장애연구사업"이라 한다)을 시행한다.
  - ② 신경인지장애연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신경인지장애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
  - 2. 신경인지장애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
  - 3. 신경인지장애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정보통신기술 등 활용 방안 연구
  -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 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인지장애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 연

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.
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인지장애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단체로 하여금 신경인지장애연구사업을 실시하게 할수 있다.
- ⑥ 신경인지장애연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신경인지장애검진사업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신경인지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(이하 "신경인지장애검진 사업"이라 한다)을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신경인지장애검진사업의 범위, 대상자,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③ 신경인지장애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  - ④ 국가는 신경인지장애 검진을 받는 사람 중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3조(역학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인지장애 발생의 원인 규

- 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·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신경인지장애환자의 비용 지원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진단 및 치료·돌 봄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·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신경인지장애환자의 가족지원 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·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 하고,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상담·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성년후견제 이용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경인지장애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「민법」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,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  - 1.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

한 이유가 있는 경우

- 2. 신경인지장애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
- 3.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,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 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치료·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,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,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사회참여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취업·자원봉사 등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2 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

노인취업알선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사회참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- 제18조(지역사회 거주·치료·돌봄 등 통합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전문인력등의 양성·훈련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 장애관리 전문인력 및 신경인지장애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(이하 "전문인력등"이라 한다)를 양성·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등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등의 범위, 양성·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20조(자원봉사자 교육·관리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 지장애환자에 대한 돌봄과 보호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를 교육· 관리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·관리 및 활동 지원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절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수행기관

- 제21조(중앙신경인지장애센터의 설치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인지 장애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 신경인지장애센터(이하 "중앙신경인지장애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 영한다.
  - 1.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
  - 2. 신경인지장애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
  - 3. 신경인지장애연구사업 지원
  - 4.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 관련 교육 · 훈련 및 지원 업무
  - 5. 제16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의 지원
  - 6. 제22조에 따른 광역신경인지장애센터 및 제24조에 따른 신경인지 장애안심센터 업무의 지원
  - 7. 제23조에 따른 신경인지장애상담전화센터의 업무 지원
  - 8. 제28조에 따른 신경인지장애등록통계사업 지원
  - 9. 제29조에 따른 신경인지장애정보시스템의 구축 · 운영의 지원
  - 10. 신경인지장애환자와 그 가족, 제20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
  - 11. 신경인지장애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
  - 12. 그 밖에 신경인지장애관리 및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신경인지장애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 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·

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- ③ 중앙신경인지장애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(광역신경인지장애센터의 설치) ① 시·도지사는 신경인지장애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 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신경인지장애센터(이하 "광역신경인지장애센 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1.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 계획 수립의 지원
  - 2. 신경인지장애 연구
  - 3. 신경인지장애 관련 시설 · 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
  - 4. 신경인지장애관리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・훈련
  - 5. 제16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
  - 6.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
  - 7. 제20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교육 관리 및 활동 지원
  - 8. 제24조에 따른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 및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
  - 9. 제25조에 따른 신경인지장애돌봄기관 관리 및 지원
  - 10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정하는 신경인지장 애 관련 업무
  - ② 시·도지사는 광역신경인지장애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

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- ③ 광역신경인지장애센터의 설치・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23조(신경인지장애상담전화센터의 설치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 인지장애예방, 신경인지장애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 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경인지장애상담전화센터(이하 "신경인지장애상담전화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  - ② 신경인지장애상담전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신경인지장애에 관한 정보제공
  - 2.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치료·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 담
  - 3. 신경인지장애환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정 보제공
  -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
 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인지장애상담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, 신경인지장애 관련 전문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- ④ 신경인지장애상담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24조(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의 설치) ① 시·군·구의 관할 보건소에 신경인지장애예방과 신경인지장애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(이하 "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  - ②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신경인지장애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
  - 2. 신경인지장애환자의 등록 · 관리
  - 3. 신경인지장애등록통계사업의 지원
  - 4. 신경인지장애의 예방 · 교육 및 홍보
  - 5. 신경인지장애화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
  - 6. 신경인지장애환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 지원
  - 7. 제20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관리 및 활동 지원
  - 8. 제16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
  - 9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
  - 10. 신경인지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
  - 11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신경인지장애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  - ③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의 장은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에 신경인지

장애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,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(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을 안내할 수 있다.

- ④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의 시설·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25조(신경인지장애돌봄기관의 지정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 구청장은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시설을 신경인지장애돌봄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「노인복지법」 제38조에 따른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신경인지장애돌봄기관으로 본다.
  - 1. 관할지역 내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신경인지장 애안심센터의 업무 안내
  - 2. 신경인지장애환자와 신경인지장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
  - 3. 신경인지장애환자 전용쉼터 운영
  - 4. 그 밖에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경인지장애돌봄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신경인지장애돌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6조(신경인지장애안심병원의 지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인지 장애의 진단과 치료·요양 등 신경인지장애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 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·시설 및 장비 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신경인지 장애안심병원(이하 "신경인지장애안심병원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신경인지장애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 원이 신청하면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.
  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경인지장애안 심병원이 신경인지장애전문병동을 설치·운영하거나 신경인지장애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·인력·장비를 확충하는 경 우에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④ 신경인지장애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신경인지장애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⑤ 신경인지장애안심병원 지정의 기준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
- 제27조(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 애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 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(이하 "공립요양병원"이라 한다)을 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.
 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법인·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  - ④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. 다만, 공립요양병원의 설치·운 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 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  -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
  -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가 공립요양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

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-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
- 2. 부도, 파산, 해산,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,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공립요양병원의 위탁 운영 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 피한 경우
- 4. 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5.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 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## 제4장 신경인지장애정보시스템 등

제28조(신경인지장애등록통계사업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인지장애의 발생과 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

- 수집·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·관리·조사사업(이하 "신경인지장애등록통계사업"이라 한다)을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「통계법」을 준용하며,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보다.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인지장애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29조(신경인지장애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인지장애 관련 사업과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경인지장애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(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)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

지부렁으로 정한다.

제30조(자료제공의 협조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제3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신경인지장애환자를 진단·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에 신경인지장애에 관한 사업을 하는법인·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.

- 1. 신경인지장애검진사업
- 2.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
- 3. 제14조에 따른 신경인지장애환자의 비용 지원사업
- 4. 제15조에 따른 신경인지장애환자의 가족지원 사업
- 5. 제16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
- 6. 제17조에 따른 사회참여 지원
- 7. 제18조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・치료・돌봄 등 통합 지원
- 8. 전문인력등의 양성에 관한 업무
- 9. 제20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교육 관리 및 활동 지원 업무
- 10.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의 업무

- 11. 신경인지장애등록통계사업
- 12. 제29조에 따른 신경인지장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
- 13. 그 밖에 신경인지장애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(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)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료 제공 요청 시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.

## 제5장 보칙

제31조(비용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

를 지원할 수 있다.

- 1. 신경인지장애연구사업, 신경인지장애검진사업,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, 제15조에 따른 신경인지장애환자의 가족지원 사업, 제17조에 따른 사회참여 지원, 제18조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·치료·돌봄 등 통합 지원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
- 2. 전문인력등의 양성·관리 및 제20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·관리 및 활동 지원에 드는 비용
- 3. 중앙신경인지장애센터, 광역신경인지장애센터, 신경인지장애상담 전화센터,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의 설치·운영에 드는 비용
- 4.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・홍보에 드는 비용
- 5.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
-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·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2조(비밀누설의 금지) 이 법에 따라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33조(위임과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

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신경인지 장애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#### 제6장 벌칙

제34조(벌칙) 제3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- 제3조(치매관리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경인지장애관리종합계획으로 본다.
- 제4조(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

신경인지장애관리위원회로 본다.

- 제5조(중앙치매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치매센터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신경인지장애 센터로 본다.
- 제6조(광역치매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광역치매센터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역신경인지장애 센터로 본다.
- 제7조(치매상담전화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경인지 장애상담전화센터로 본다.
- 제8조(치매안심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경인지장애안심 센터로 본다.
- 제9조(치매안심병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치매안심병원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경인지장애안심병원으로 본다.
- 제10조(공립요양병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으로 본다.
- 제11조(치매정보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경인지장

애정보시스템으로 본다.

제1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"신경인지장애"란 「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 2조제1호에 따른 신경인지장애를 말한다.

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"치매"를 각각 "신경인지장애"로 한다.

제39조의17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3. 「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
-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치매"를 "신경인지장애"로 한다.

제2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신경 인지장애안심센터의 장(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경인지장애환자인 경우 로 한정한다)

제31조제3항제4호 중 "치매"를 "신경인지장애"로 한다.

③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8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사. 「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-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다목 중 "「치매관리법」"을 "「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"로, "치매환자"를 "신경인지장애환자"로 한다.

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.

제9조제2호 중 "치매"를 "신경인지장애"로 한다.

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7조 중 "「치매관리법」 제10조제6항 및 제17조제3항"을 "「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6항 및 제24조제3항"으로 한다.

⑦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8. 「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경인지장애정보시스템
- 제1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치매관리법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「치매관리법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